

학생상담실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 개정 2021.02.22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4.03.01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생상담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학생상담실은 학생(전공심화과정 포함)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진출에 필요한 심리·학업·진로 등에 대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과 대학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<개정 2021.02.22.>

제3조 (조직)

- ① 학생상담실은 학생처에 속한다.<개정 2021.02.22., 2022.03.04., 2024.03.01.>
- ② 학생들의 전문상담을 위하여 전임상담사를 배치하며, 객원상담사, 시간제상담사, 성폭력상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자격)

- ① 학생상담실 전임상담사는 상담심리사 2급 (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)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이상인 자로 한다.
- ② 객원상담사 및 시간제상담사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5조 (업무)

학생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- ②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해석 상담
- ③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
- ④ 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평가 및 환류
- ⑤ 기타 학생상담실 기능과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

제6조 (상담사의 의무)

- ① 상담사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 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의뢰된 학생을 상담한다.
- ② 상담사는 학생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③ 상담사는 학생 상담 내용 중 학생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지도교수 및 학교 관계자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